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2139
----------	------

발의년월일 : 2011. 6. 13.

발 의 자 : 김정택·신성철·정승현·정진교·  
한갑수·함영미·황효진 의원

##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 법령발췌서: 붙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7조 및 제36조

## 관련 사업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2012년도 소요예산액 : 2,000,000천원

2,000명(화장장려금 지원자) × 1,000,000원(100%지원) = 2,000,000천원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36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다음부터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안산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제8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접수인	<b>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b>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			
	지급은행	은행	계좌번호			
사망자 화장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일	. . .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		
	화장일	. . .	화장장소			
분묘개장 후 화장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		
	분묘의 위치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		
	개장일 및 화장일	. . .	화장장소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3.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망자를 공무원이 부양한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div>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div>						
안산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490
----------	------

제안년월일 : 2014년 3월 11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의 조성규모를 축소하고
- 조성된 원금의 보호와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함

##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규모를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 원금의 보전금 지출을 제한하되, 기금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보전금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부칙안 제2조)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10년까지 총1,000억원”을 “총1,200억원”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보전금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를 “보전금은 제3조제2항의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으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생략)                      ②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10년 까지 총1,000억원을 조성한다.</p>	<p>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총2,000억원.....</p>	<p>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총1,200억원.....</p>
<p>제9조(융자)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이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u>보전금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u>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⑥ (생략)</p>	<p>제9조(융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보전금은.....                      .....                      .....                      .....                      .....                      ⑤~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융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보전금은 제3조제2항의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으며 …                      .....                      .....                      ⑤~⑥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u>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39
----------	------

제안년월일 : 2014년 3월 11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80% 이상의 화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 상황에 비춰볼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 조례안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축소하고
- 적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신청기한과 처리기간 등을 수정함

## 2. 주요내용

- 지급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서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로 축소함(안 제3조)
- 지급기준을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100퍼센트”에서 “20만원”으로 수정함(안 제4조)
- 화장장 지급신청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안 제5조), 장려금 지급 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안 제6조) 수정함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및 제36조”를 삭제하고, “지원”을 “지급”으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4호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안산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제2항 중 “90일”을 “30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7조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한다.

부칙 중 “2012년 1월 1일”을 “2014년 10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8조 관련)

연번	신청일	신청인			화장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개장장소	화장장소	호

#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lt;삭제&gt; ----- ----- 지급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화장장려금”(다음부터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원안과 같음)</p> <p>3. ----- 이하 ----- -----.</p> <p>4. ----- 의 하 ----- -----.</p>
<p>제3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고자에게 지급한다.</p> <p>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p> <p>2. 안산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p>	<p>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안산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p>
<p>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p>	<p>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p>
<p>제5조(신청방법)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 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제5조(신청방법)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30일 -----.</p>

원안	수정안
<p>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지급방법) ① ----- ----- 30일 ----- -----.</p> <p>② (원안과 같음)</p>
<p>제7조(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제7조(제외대상) 다음 ----- ----- -----</p> <p>1.- 2. (원안과 같음)</p>
<p>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 2014년 10월 1일-----</p>